

일반 주해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1. 대한민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 중인 대한민국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¹⁾

3. 양허단계: 부속서 2-나(관세철폐)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L, M, N, O, P, Q, T, U, V, W, X, Y 및 Z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L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M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N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되어 이행 15년차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되고,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O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단계별 양허유형 P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1) 기준세율은 대한민국 관세법 제69조에 따라 채택된 조정관세로서 2006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것을 포함한다.

- 바. 단계별 양허유형 Q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사. 단계별 양허유형 T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관세는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아. 단계별 양허유형 U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7년차까지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8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자. 단계별 양허유형 V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2) 10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24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차. 단계별 양허유형 W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규정을 따른다.
- 1)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 2)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종가세 3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카. 단계별 양허유형 X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관세율이 유지된다.
- 다. 단계별 양허유형 Y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대한민국이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본) 및 그 모든 개정에 규정되는 약속의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 언급된 세계무역기구 문서에서, 대한민국은 특히 2005년에서 2014년의 기간 동안 단계별 양허유형 Y로 규정된 품목에 대하여 최소 시장접근을 증가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 파. 단계별 양허유형 Z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에 증가세 20퍼센트로 인하된다. 관세는 이행 2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디지털제품이 고정되어 있는 전달매체는 그 상품이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관계없이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서명시의 이 양허유형에 포함된 전달매체가 소호 8524.10, 8524.31, 8524.32, 8524.40, 8524.39, 8524.51, 8524.52, 8524.53, 8524.60, 8524.99 및 8524.91로 분류된 상품을 포함함을 인정한다.

5. 두 개 이상의 구분되는 동력원이나 연료원을 가지는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로서,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그 차의 동력 시스템에 본질적 특성을 제공하는 차는 그 하이브리드 차가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실린더 용량과 점화 장치 유형을 가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단일 동력원이나 연료원인 자동차에 제공되는 관세 대우가 부여된다.

6. 대한민국은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자동차 동력 시스템에 본질적 특성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제8703호의 하이브리드 차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8703.90.7000호 또는 제8703.90.9000호에 분류한다.